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 진 오 의원

2. 제안이유

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근거 마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9조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“월 5만원” 지급 하던 것을 “월 7만원”으로 “월 2만원” 증액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대한민국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,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현실화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·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인근 김천시의 경우 월 8만원, 군위군은 월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시의 경우 증액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